

제321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2월20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공청회 개최의 건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된 안건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3
2. 공청회 개최의 건 4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윤후덕·배기운·민홍철·최민희·박민수·황주홍·이낙연·안민석·우윤근 의원 발의) 4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이에리사·이원욱·

- 홍문표·이상직·신장용·전순옥·서기호·강동원·김재윤·유은혜·박혜자 의원 발의) 4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현영희·민병주·이에리사·염동열·윤명희·서상기·김명연·송영근·김한표·이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5888) 4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만우·이자스민·안효대·이종훈·이이재·李宰榮·염동열·김세연·박성호·이에리사·이운룡·조명철·민병주·정세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7078) 4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영희 의원 대표발의)(현영희·이명수·이만우·김성찬·이현승·이한성·문대성·박성호·손인춘·송영근 의원 발의) 4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배재정·김용익·신경민·배기운·김재윤·전순옥·최민희·유은혜·김기준·유기홍 의원 발의) 4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박완주·최규성·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51) 4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유기준·윤영석·신성범·유승민·김을동·정갑윤·박성호·이만우·김한표 의원 발의) 4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강기운·박성호·정갑윤·신성범·장길부·이명수·김정록·박인숙·김성찬·원유철·이종훈 의원 발의) 4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태흠·박완주·김을동·金永柱·김춘진·문정립·황주홍·유성엽·강동원 의원 발의) 4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정몽준·김재경·권성동·김용태·이한구·이군현·신성범·전순옥·송광호 의원 발의) 4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노회찬·김제남·김선동·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석기·박원석·정진후 의원 발의) 4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김세연·황주홍·윤명희·김명연·신동우·백재현·신성범·정우택·이노근·김을동 의원 발의) 4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손인춘·송영근·김장실·김상민·김현숙·강은희·황영철·최봉홍·류지영·윤명희·김정록·김진태·유일호·이상일 의원 발의) 4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세연·신성범·최봉홍·김정록·문대성·남경필·이노근·김한표·조명철·이만우 의원 발의) 5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한명숙·이낙연·최동익·박주선·문병호·이상규·김춘진·배기운·이상민 의원 발의) 5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윤명희·정갑윤·김춘진·신성범·최원식·이낙연·주승용·이명수·문정립 의원 발의) 5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문정립·손인춘·한정애·박인숙·민병주·류지영·은수미·유승희·김상희·김현숙·민현주·김태호·유일호·윤명희·이종훈·서상기·현영희·권은희 의원 발의) 5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윤관석·박수현·이석현·김민기·이윤석·김성곤·박지원·정세균·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1) 5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한정애·박혜자·최동익·최원식·서영교·임수경·장하나·전순옥·이미경·김현·설훈·김용익 의원 발의) 5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상희·전순옥·유은혜·박원석·김현미·김제남·장하나·이학영·박혜자 의원 발의) 5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현영희 의원 대표발의)(현영희·이명수·이만우·김성찬·이현승·이한성·문대성·박성호·손인춘·송영근 의원 발의) 5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송광호·홍문표·박덕흠·이장우·이

운룡·이완구·정우택·강기윤·성완중·이명수·민병주·이인제·노철래·손인춘·김을동·이노근·윤진식·김현숙·김동완·김태원·이에리사 의원 발의) 5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남인순·박범계·백근기·윤후덕·은수미·인재근·정청래·진선미·진성준·최동익 의원 발의) 5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주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차 회의 때 위원님들 간의 상견례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위원님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정치혁신위의 활동을 했었는데 성과를 좀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의 우리 정치개혁위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서로 좋은 의견들을 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한정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민주당 한정애입니다.

지켜보는 눈도 많고 또 기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기간이 있는 만큼 기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성완중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중 위원** 성완중 위원입니다.

츄츄히 살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오늘 관련 부처인 교육부의 서남수 장관님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문상부 사무총장님과 관계관들도 나와 계십니다. 수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우리 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선거제도와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각 주제별로 소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선거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서 지방선거 관련법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원은 여야 각 5인씩 모두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소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이신 백재현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과 선거구획정을 함께 논의할 교육자치 관련법 소위는 여야 각 4인씩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김학용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앞서 한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와 두 차례의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 공청회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별 소위 활동계획은 오늘 회의에서 소위가 구성되면 각 소위원회별로 별도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그동안 논의된 위원회 활동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4분)

○**위원장 주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관련법 소위와 교육자치 관련법 소위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소위원장과 소위원 명단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관련법 소위원회와 교육자치 관련법 소위원회의 소위원장과 소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공청회 개최의 건

(14시15분)

○위원장 주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 계획안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1차 공청회는 12월 27일 10시에 지방자치선거제도를 주제로 하여 개최하고 2차 공청회는 내년 1월 7일 10시에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를 주제로 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각 공청회의 진술인은 총 6인으로 하고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윤후덕·배기운·민홍철·최민희·박민수·황주홍·이낙연·안민석·우윤근 의원 발의)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이에리사·이원욱·홍문표·이상직·신장용·전순옥·서기호·강동원·김재윤·유은혜·박혜자 의원 발의)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현영희·민병주·이에리사·염동열·윤명희·서상기·김명연·송영근·김한표·이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5888)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만우·이

자스민·안효대·이종훈·이이재·李宰榮·염동열·김세연·박성호·이에리사·이운룡·조명철·민병주·정세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7078)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영희 의원 대표발의)(현영희·이명수·이만우·김성찬·이현승·이한성·문대성·박성호·손인춘·송영근 의원 발의)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배재정·김용익·신경민·배기운·김재윤·전순옥·최민희·유은혜·김기준·유기홍 의원 발의)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박완주·최규성·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51)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유기준·윤영석·신성범·유승민·김을동·정갑윤·박성호·이만우·김한표 의원 발의)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강기운·박성호·정갑윤·신성범·강길부·이명수·김정록·박인숙·김성찬·원유철·이종훈 의원 발의)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태흠·박완주·김을동·金永柱·김춘진·문정림·황주홍·유성엽·강동원 의원 발의)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정몽준·김재경·권성동·김용태·이한구·이군현·신성범·전순옥·송광호 의원 발의)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노회찬·김제남·김선동·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석기·박원석·정진후 의원 발의)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김세연·황주홍·윤명희·김명연·신동우·백재현·신성범·정우택·이노근·김을동 의원 발의)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손인춘·송영근·김장실·김상민·김현숙·강은희·황영철·최봉홍·류지영·윤명희·김정록·김진태·유일호·이상일 의원 발의)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세연·신성범·최봉홍·김정록·문대성·남경필·이노근·김한표·조명철·이만우 의원 발의)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한명숙·이낙연·최동익·박주선·문병호·이상규·김춘진·배기운·이상민 의원 발의)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윤명희·정갑윤·김춘진·신성범·최원식·이낙연·주승용·이명수·문정림 의원 발의)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문정림·손인춘·한정애·박인숙·민병주·류지영·은수미·유승희·김상희·김현숙·민현주·김태호·유일호·윤명희·이종훈·서상기·현영희·권은희 의원 발의)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윤관석·박수현·이석현·김민기·이윤석·김성곤·박지원·정세균·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1)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한정애·박혜자·최동익·최원식·서영교·임수경·장하나·전순옥·이미경·김현·설훈·김용익 의원 발의)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상희·전순옥·유은혜·박원석·김현미·김제남·장하나·이학영·박혜자 의원 발의)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현영희 의원 대표발의)(현영희·이명수·이만우·김성찬·이현승·이한성·문대성·박성호·손인춘·송영근 의원 발의)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송광호·홍문표·박덕흠·이장우·이운룡·이완구·정우택·강기운·성완중·이명수·민병주·이인제·노철래·손인춘·김을동·이노근·윤진식·김현숙·김동완·김태원·이에리사 의원 발의)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남인순·박범계·백근기·윤후덕·은수미·인재근·정청래·진선미·진성준·최동익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주호영** 다음은 법률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6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박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의원**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갑 박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7078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뿐만 아니라 순서 또는 방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기호를 없애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후보인 것과 같은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무효투표수가 전체투표수의 약 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 사퇴한 첫 번째 순위에 게재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방향성이 없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는 한편 무효투표가 발생하더라도 특정 순서에 배치된 후보에게 무효투표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888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 관련 경력 5년 이상’ 요건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조항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유효하도록 한 부칙의 일몰규정에 의하여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학업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교육감의 교육에 관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 제24조제2항의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 조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치의 교육 개입 또는 교육의 정치화 현상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도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칙 제2조의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안번호 7078번과 의안번호 5888번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도종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의원 민주당 도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개정된 동 법률 제10046호 부칙 규정에 따라 현행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에 관한 규정과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즉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의 규정이 2014년 6월 30일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현행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그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편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경력, 교육연구기관 근무 경력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경력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지역사회 인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호영 도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총 6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원선거제도 존치 및 교육위원회 존속과 관련한 유성엽 의원안, 박인숙 의원안, 도종환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대해 논의한 결과 2010년 지방선거에 한하여 주민 직선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하기로 하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선거제도를 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안은 2014년 6월 30일 폐지 예정인 교육의원선거제도 및 교육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시키기 위하여 교육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폐지 예정인 교육의원선거제도의 존속 여부는 교육의 민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2010년 교육의원선거제도를 폐지하게 된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

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교육감 출마 시 교육경력 유지 여부와 관련한 유성엽 의원안, 박인숙 의원안, 도종환 의원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엽 의원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의 5년 이상 교육경력 요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 박인숙 의원안과 도종환 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교육감 후보자의 5년 이상 교육경력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종환 의원안은 교육행정 경력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은 20년에서 15년으로, 그리고 5년으로 각각 완화되어 왔으나 교육경력의 5년 이상 요건은 1997년 이후 16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09년 헌법소원 심판에서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후보자 교육경력 요건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교육감 자격요건 완화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내 교육의원 수의 상향 조정과 관련한 유성엽 의원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내 교육의원 수를 현재의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교육에 관한 의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의원 정수를 18명 증원할 경우 교육의원 정수 변경으로 인해 현행 교육의원 선거구를 다시 확정해야 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관련한 현영희 의원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는 후보자 등록 시 추천한 교육감 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도록 임명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여부는

각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므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추이와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궐선거 시 교육감 피선거권 완화와 관련한 이상민 의원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현재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보궐선거에 한해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까지 당적을 보유한 사람도 출마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정당원에 대한 교육감 후보자 자격 제한은 헌법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는 점 그리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보궐선거 간의 후보자 자격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변경과 관련한 박인숙 의원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되는 투표용지를 현재의 사각 형태에서 원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순서를 정당 기호순으로 오해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투표용지에 따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활용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후보자 성명 기재 위치에 따라 후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여전히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주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6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총 18건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거구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여상규 의원안, 강기윤 의원안, 유승우 의원안 및 정갑윤 의원안은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의원정수를 관할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중선거구제는 해당 지역구에 대한 의원의 책임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소선거구제는 또한 과도한 사표가 발생한다는 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박기춘 의원안과 박성호 의원안은 현재 국회에 두도록 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상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주임무로 하는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안, 유승우 의원안, 정갑윤 의원안, 신의진 의원안 및 황주홍 의원안은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 및 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려는 것이고 이재오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 지역구 시·도 의원선거까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을 허용하면 선거 과열 및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초래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유권자의 알권리 신장 및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당공천이 폐지되는 경우 특정 정당과 후보자와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의진 의원안은 정당의 지지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재오 의원안과 황주홍 의원안은 당적 보유자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한 바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상규 의원안, 김을동 의원안, 유승희 의원안 및 남인순 의원안은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서 3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신의진 의원안은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로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를 30%로 하여 전원 여성 추천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며, 황주홍 의원안은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로 정수의 30%에 대해 여성명부 기초의원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승희 의원안은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서 남성과 여성 후보자를 각각 분리하여 선출하고, 남인순 의원안은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서 여성 당선인 할당제를 도입하여 의원정수의 예외를 규정하며, 김을동 의원안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도 10% 이상 여성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여성 후보자 추천을 의무화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 장애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 등도 같이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김성곤 의원안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장애인을 1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정치 참여 및 권익 신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비례대표명부 순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고 10% 이상 추천하여도 동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기타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영희 의원안은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지사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의 갈등 소지를 줄이고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교육행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점도 같이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안은 비례대표의원이 선거범죄를 비롯한 범법행위로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결원이 되는 경우 비례대표의원직의 승계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 승계를 금지한 과거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였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춘 의원안은 현행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공정언론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고 선거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오늘날 언론매체가 융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심의기구의 통합 및 상설화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주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별도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들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소위에 각각 회부하고자……

○백재현 위원 다 의견들 없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호영 확인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소위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재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안건 말고도 안행위에서 여야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류돼 있는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여나 야나 안행위에 있던 것을 의장한테 요청을 해서 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회송 절차 밟은 안건들은 다시 올려서 상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전체를 드리면서 오늘 대체토론은 마치더라도 이 안건 이외에도 더 상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서 어제 제출한 안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다 함께 올려서 같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일단 현재까지 상정된 안건을 소위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관 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 결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되는 법안 등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관련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통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공청회의 계획이 의결되는 등 특위 활동을 위한 준비는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역대 정개특위 활동이 그랬듯이 상호 양보와 협의가 없이는 정상적인 특위 활동이 결실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좀 더 나은 정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부장관과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충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위원 잠깐만, 저도 서면질의를 여기서 즉석에서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주호영 예, 서면질의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존재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당적 1년 보유 제도 하는 것을 예외를 두자 이런 법률안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현재 교육감 자격을 더 확대를 해서…… 학교운영위원이나 이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당적을 보유한 사람들이 굉장하거든요. 일부 도는 당적을 조례로 금지를 시켜 놓았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금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부를 참 확인하기는 힘든데 그걸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교육부장관님, 되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위원장 주호영**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당적 보유한 실태를 좀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이노근·황주홍 위원님으로부터도 추가 서면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 서면질의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호영** 예.

○**윤후덕 위원** 하나만 좀 간단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께 물어보게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주호영** 예,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후덕 위원** 기초선거하고 교육자치 선거…… 기초단체 선거는 지금 정당공천제가 배제될 수도 있잖아요, 개정하기에 따라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이제 해야지요.

○**윤후덕 위원** 예, 교육자치에는 정당공천이 없고. 그래서 투표용지의 순번 문제로 많은 이견과 또 현실적인 혼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박인숙 의원님이 낸 안을 보니까 원형투표지에 대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도 좀 의견을 밝혀 주시고 향후 소위원회에 상세히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원형투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안이라면 저희들이 벌써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바로 그 기계장치에 의해서,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해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의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원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다 여기저기, 그러니까 선거구가,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능한데 전국 어디에 가든지 다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전국의 모든 투표용지가 그 현장에서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공천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원형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후보자가 나오면 여기의 글자가 작아지고 또 적은 후보자가 나오면 커지고 이래서 상당히 여러 어려움이 있고, 개표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과연……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원형투표의 형태…… 투표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순위로 착각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정당공천이 배제된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불이익 내지 희비가 엇갈리는 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실제 강구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선거관리의 현 제도 내에서 최대한, 일차적으로는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투표용지에다가 어떻게 선명하게 잘 표시를 해서 이 제도가 정당공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권자가 제대로 알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안에는 보면 교호 투표용지로 해서 순위를 바꿔 가며 인쇄한다, 이러면 정말 개표 때 혼란스럽고 또 투표하는 사람도 혼란스럽고, 과연 이 제도도 합리성이……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크게 없어요.

이래서 정말 이게 대안이 뭔가 찾아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 윤후덕 위원** 소위에서 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소위에서 논의해 보시지요.
 - 윤후덕 위원** 기술적 문제를 검토해 봅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 윤후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주호영**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특별히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지방선거 관련법 (10인)	김학용 이노근 이우현 장윤석 홍문중	새누리당(5)
	김영주 박기춘 ◎백재현 황주홍	민주당(4)
	심상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교육자치 관련법 (8인)	◎김학용 김희정 박대동 성완중	새누리당(4)
	김성주 도종환 윤후덕 한정애	민주당(4)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6인)

김영주 김학용 김희정 도종환
 박기춘 박대동 백재현 성완중
 심상정 윤후덕 이노근 이우현
 장윤석 주호영 한정애 황주홍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박인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임재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장관 서남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문상부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2. 6. 13 여상규·유기준·운영석·신성범·유승민·김을동·정갑윤·박성호·이만우·김한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 발의)

(2012. 6. 28 강기운·박성호·정갑윤·신성범·강길부·이명수·김정록·박인숙·김성찬·원유철·이종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7. 12 이명수·김태흠·박완주·김을동·金永柱·김춘진·문정림·황주홍·유성엽·강동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1 이재오·정몽준·김재경·권성동·김용태·이한구·이군현·신성범·전순옥·송광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16 유승우·김세연·황주홍·윤명희·김명연·신동우·백재현·신성범·정우택·이노근·김을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22 신의진·손인춘·송영근·김장실·김상민·김현숙·강은희·황영철·최봉홍·류지영·윤명희·김정록·김진태·유일호·이상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2013. 2. 5 정갑윤·김세연·신성범·최봉홍·김정록·문대성·남경필·이노근·김한표·조명철·이만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6 김성곤·한명숙·이낙연·최동익·박주선·문병호·이상규·김춘진·배기운·이상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3. 5. 20 황주홍·유성엽·윤명희·정갑윤·김춘진·신성범·최원식·이낙연·주승용·이명수·문정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 발의)

(2013. 6. 26 김을동·문정림·손인춘·한정애·박인숙·민병주·류지영·은수미·유승희·김상희·김현숙·민현주·김태호·유일호·윤명희·이종훈·서상기·현영희·권은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8. 9 유승희·한정애·박혜자·최동익·최원식·서영교·임수경·장하나·전순옥·이미경·김현·설훈·김용익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3. 9. 24 남인순·김상희·전순옥·유은혜·박원석·김현미·김제남·장하나·이학영·박혜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현영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10. 16 현영희·이명수·이만우·김성찬·이현승·이한성·문대성·박성호·손인춘·송영근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3 이상민·윤후덕·배기운·민홍철·최민희·박민수·황주홍·이낙연·안민석·우윤근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3. 3. 20 유성엽·이에리사·이원욱·홍문표·이상직·신장용·전순옥·서기호·강동원·김재윤·유은혜·박혜자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3. 7. 4 박인숙·현영희·민병주·이에리사·염동열·윤명희·서상기·김명연·송영근·김한표·이군현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3. 9. 30 박인숙·이만우·이자스민·안효대·

이종훈·이이재·李宰榮·염동열·김세연·박성호·이에리사·이운룡·조명철·민병주·정세균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0. 16 현영희·이명수·이만우·김성찬·이현승·이한성·문대성·박성호·손인춘·송영근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3. 11. 8 도종환·배재정·김용익·신경민·배기운·김재윤·전순옥·최민희·유은혜·김기준·유기홍 의원 발의)

이상 19건 2013년 12월 12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2. 5. 30 박기춘·박완주·최규성·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이찬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 발의)

(2012. 10. 30 이상규·노희찬·김제남·김선동·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석기·박원석·정진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13. 7. 9 박기춘·윤관석·박수현·이석현·김민기·이윤석·김성곤·박지원·정세균·김관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15 박성효·송광호·홍문표·박덕흠·이장우·이운룡·이완구·정우택·강기윤·성완중·이명수·민병주·이인제·노철래·손인춘·김을동·이노근·윤진식·김현숙·김동완·김태원·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2013. 12. 6 홍익표·남인순·박범계·백균기·윤후덕·은수미·인재근·정청래·진선미·진성준·최동익 의원 발의)

이상 5건 2013년 12월 18일 회부됨

○청원 회부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1 부산 북구 금곡동 95-11, 101호

정진우 외 8인으로부터 홍의락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12. 1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김태근·박차옥경·이태호로부터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2월 16일 회부됨